

# 부 의 안

1. 제안부서 : 택지사업본부 마곡사업처 토목조경팀

2. 제안근거

- 설계변경심사위원회 운영기준(2015.05)
- 실정보고(3공구 하수관거 설치공사 변경) 제출[마곡 감 15-594호(2015.12.11.)]

3. 제안사유

- 마곡 3공구 하수관로 설치공사 중 신설 우수관로(D1350mm)와 서남물재생 센터 차집관거 연결을 위한 연결공법이 당초 ABS물막이 차수공법으로 설계 되었으나, 차집관로 노후화 등 현장여건 변경사항을 감안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회의결과 공법변경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에 따라 대안공법인 무단수 천 공공법으로 변경하는 등 추가 변경사항이 있어 설계변경코자 함

4. 심사의결 요구사항

- 설계변경의 타당성, 단가의 적정성, 협의낙찰률 심사
- 설계변경 주요항목

구분	규격	단위	당초	변경	증,감(-)	비고
1. 토공						
터파기/토사		m <sup>3</sup>	120,996	129,323	8,327	
퇴매우기/토사	기계	m <sup>3</sup>	102,120	105,701	3,581	
토사운반(도저)	L=30m이하	m <sup>3</sup>	145,208	117,225	-27,983	
토사운반(덤프)		m <sup>3</sup>	27,319	60,545	33,226	
사토운반(덤프)	L=2.5km	m <sup>3</sup>	8,993	8,523	-470	
사면보호	PVC천막지	m <sup>2</sup>	-	7,462	7,462	
2. 관로공	D400~1,350mm	m	2,084	2,084	-	
3. 구조물공						
철근콘크리트타설		m <sup>3</sup>	6	65	59	

철근가공 및 조립	보통	ton	-	5.877	5.877	
HORY BEAM설치		개소	40	-	-40	

5. 참고사항 : 부의안 설명서 1부.

2015년 12월 일

제안자 토목3급 강동수